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1.6.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 제안이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안 제4조제2항제2호가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른 삭제 (안 제8조제2항)

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에 21,000천원 반영 예정

다. 협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3.17.~2021.4.6.)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개정 취지

❍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 내용 변경(안 제4조제2항제2호)**

-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명칭’

❍ **‘보조사업의 명칭’ 으로 개정됨에 따른 삭제(안 제8조제2항)**

❍ **표지판 설치비용의 예외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보조사업자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 원칙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조,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0조)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공공활용도를 향상시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안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제2항제2호에서는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을 ‘보조사업의 명칭’ 으로 표시내용을 변경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사업을 구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화 하였음.

- 안 제8조(표지판 설치장소 등)제2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표지판 내용이 ‘보조사업의 명칭’ 으로 개정함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운영표지판 변경 조문을 삭제함.

- 안 제9조(비용부담)과 관련하여

  ·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일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에 적합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붙임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